

『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가 제·개정됨에 따라,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도 시미관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-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-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포함(안 제6조)
-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서 간판에 외국어 병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옥외광고업자 교육시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
-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(안 제24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
- 입법예고 : 2013. 3. 20 ~ 4. 9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.(2013.4.16)

5. 검토의견

□ 본 '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' 은,

○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의 제·개정에 따라, 상위법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,

○ 그 주요내용으로는,

-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.
(원색사진, 설명서 및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)
-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.
(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)
-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규정
- 주민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~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.
- 사업비 및 예산지원, 광고물 디자인 등이 포함된 광고물등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·운영에 관한사항.
-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는 관광지 등 일정한 지정된 구역에서 광고물 심의규정에 맞게 표기.
-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의 자격, 기준, 위탁절차 등을 명기.
- 기타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위탁, 이행강제금 부과기준, 옥외광고업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, 교육 위탁, 수수료 기준,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음.

□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전부 개정되어 있으므로,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